2000년 이후 독도/竹島 관련 일본학계의 역사학 연구*

박 병 섭**

〈목 차〉

1. 머리말
2. 17세기 독도/竹島 영유권
3. '마쓰시마 도해허가'설
4. '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
5. 지샤부교(寺社奉行)의 마쓰시마 인식
6. '덴포(天保)다케시마 일건'
7. 1877년 태정관 지령
8. 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
9. SCAPIN-677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10. 맺음말

〈국문초록〉

독도/竹島에 관한 일본어 논문에서 연구자 간 논쟁이 치열하다. 특히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와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자의 견해 차이는 다음과 같다. ①17세기 독도/竹島 영유권에 관해 '최근의' 쓰카모토는 일본은 역사적 권원을 가졌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일본은 영유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②쓰카모토의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에 대해 이케우치는 '폭론'이라고 결론지었다. ③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

* 본고는 2020년 11월 20일에 열린 한국영토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 중 <10. 맺음말> 등을 개정한 것임

** 일본 竹島=독도 연구넷

령에 관해 쓰카모토는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금지되지 않았다고 하나, 이케우치는 마쓰시마 도해 금지가 함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④이케우치는 1740년대 지샤부교(寺社奉行)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라고 인식했다고 하나, 쓰카모토는 의문시한다. ⑤덴포(天保)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관해 이케우치는 마쓰시마로의 도항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나, 쓰키모토는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⑥1877년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의 비정에 대해 이케우치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라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다케시마도 '외 일도'도 울릉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⑦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의 비정에 대해 '최근의' 이케우치는 독도인 것 같다고 하나, '최근의' 쓰카모토는 이를 독도라고 하는 것은 한국정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이케우치-쓰카모토 논쟁에서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으나, 이를 박병섭이 보완했다. 이케우치의 쓰카모토 비판에 대해 쓰카모토의 반론은 약하며, 양자 간 논쟁은 수렴될 기미가 보인다. 한편, 양자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독도/竹島가 일본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견해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이 조약은 독도/竹島의 소속에 관한 어떠한 해석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이 섬은 국제법상 우티·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한국 소속으로 되었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태정관 지령, 독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우티 포씨디티스

1. 머리말

일본에서 독도/竹島 문제를 둘러싼 연구자 간 논쟁은 치열하며 서로 가차 없는 비판을 가한다. 예를 들어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竹島문제연구회가 조사·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장애가 된 것이 있다.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씨에 의한 일련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 관한 연구다"라고 말한 다음, 이케우치의 해석을 가리켜 "초보적인 미스"라고 주장했다.[1] 이에 대하여 이케우치는 하나하나씩 실증적으로 반론하고, 시모조의 주장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전혀 성립되지 않는 감정론에 불과

1)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07, 3-4쪽.

하다"라고 반박했다.[2] 이들의 연구를 주시하고 있던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는 시모조와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훗날 주장을 바꾸어 이케우치의 견해를 지지했다.[3]

시모조는 나이토에 대하여, "나이토의 竹島[독도] 연구는 竹島 문제의 본질을 계속 왜곡해 왔다. 곡학아세(曲學阿世), 나이토 씨의 竹島 연구의 문제점은 거기에 있다"라고 비판했다.[4] 그는 나이토가 세상에 아첨하여 학문을 왜곡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런 주장은 비판이 아니라 중상이라고 할 만하다. 시모조의 말버릇은 최근에도 여전하다. 그는 박병섭이 『조선사연구회 회보(朝鮮史研究会会報)』에서 이케우치는 1900년 칙령 제41호에 기재된 石島에 대한 견해를 바꾸었다고 쓴 기사에 대해, "박병섭 씨는 『조선사연구회 회보』의 서평란을 이용하여 "칙령의 石島는 竹島=독도"라는 프로파간다를 행한 것이다"라고 비난했다.[5]

최근에는 쓰카모토 다카시(塚本孝)에 대한 이케우치의 비판이 주목된다. 이케우치는 쓰카모토의 '마쓰시마(松島) 도해면허'설에 대해, "무리한 주장", "이런 공소(空疎)한 사료 해석으로 외무성 견해의 '구멍 메우기'(穴埋め)를 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6]라고 엄히 비판했다. 또한 쓰카모토의 1877년 태정관(太政官) 지령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케우치는, "무리한 논증", "이런 논증은 학문적 영위(營爲)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일어난 전후 관계를 무시해 제멋대로 상상을 부풀리는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다. 불필요·부당한 혼란을 논의의 현장에 끌어들이고 있을 뿐이다"[7] 라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쓰카모토의 반론은 아직 없는 듯하다.

---

2)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103쪽.
3) 内藤正中·金柄烈, 『史的検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2007, 22쪽.
4) 下條正男, 「続 竹島問題研究の課題」 『現代コリア』, 2005a, 7/8月号, 21쪽.
5) 下條正男, 「実事求是 第51回, 慶尚北道独島史料研究会編 『竹島問題100問100答批判2』に対する批判(1)」, 2017年12月21日掲載.(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jitsuji-51.html)
6) 池内敏,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 63쪽.
7) 池内敏, 위의 책, 120-122쪽.

한편, 이케우치의 연구에 대해서는 정치학자 기무라 간(木村幹)이 비판했다. 기무라는 이케우치의 저서『다케시마 문제란 무엇인가(竹島問題とは何か)』에 대한 서평에서, “한국 측 사료는 그 태반이 이미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것이며 특별히 새로운 사료가 없다. 오히려 이에 관한 저자의 분석은 한국 측 문헌이나 그 해석의 신빙성을 일본 측 사료로써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대사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한 전 근대에 관련된 분석에서는 일본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료를 이용한, 사료 간 상호 검증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20세기 이후,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미 알려진 한정된 몇 가지 사료의 내용이 정리되고 있을 뿐이며 표면적으로 분석되어 있다”라고 비판했다.[8] 이케우치는 이런 비판을 거의 무시하고, 그 후의 저서『竹島—또 하나의 일·한 관계사(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에 반영하지 않았다. 기무라의 비판을 참고로 하여 박병섭은 이케우치의 후자의 저서를 구체적으로 비판했다.[9] 이런 비판을 들었는지 이케우치는 앞으로의 연구는 자기 전문인 현대 이전 일본 역사에 한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10]

이케우치 외에도 연구자들은 연구 발표에 신중하게 된 영향도 있었는지 일본어로 발표된 독도에 관한 논문 수는 2017년부터 <그림 1>과 같이 줄어 2019년에는 7편 정도에 머물렀다.[11] 본고는 일본어로 발표된 논문 가운데 특히 쟁점이 된 연구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이슈는 ①17세기 독도 영유권, ②‘마쓰시마 도해허가’설, ③‘다케시마 도해금지령’, ④지샤부교(寺社奉行)의 마쓰시마 인식, ⑤‘덴포(天保)다케사마일건’, ⑥1877년 태정관 지령, ⑦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 ⑧SCAPIN-677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이다.

---

8) 木村幹,「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東洋史硏究』, 2014, 663쪽.
9) 朴炳渉,「池内敏『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獨島硏究』 第20号, 2016b, 282쪽.
10) 朝鮮史硏究会月例会(2017.5.20)에서의 이케우치 사토시 발언.
11) 출전: 아래 사이트 <竹島＝独島論争(資料集)>, ‘論文·硏究書一覧表’를 바탕으로 작성함. http://www.kr-jp.net/toshokan/zasshi.html

본고에서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에도(江戶)시대의 호칭에 따라 기본적으로 울릉도를 가리키며, '마쓰시마(松島)'는 독도를 가리킨다. 다케시마가 독도를 가리킬 때는 竹島[독도]라고 표기한다. 또한 인용문에서 ( ) 안은 원문대로이며, [ ] 안은 필자의 주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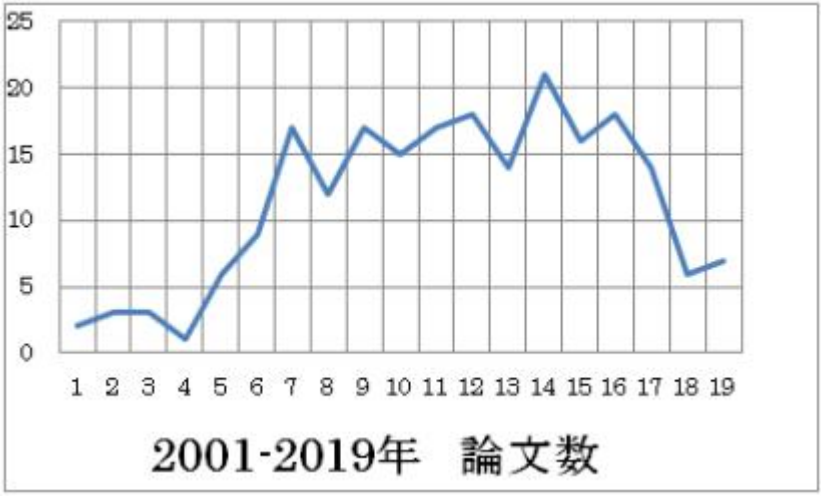

<그림 1> 2001-2019년에 발표된 일본어 논문 수

2. 17세기 독도/竹島 영유권

2008년 일본 외무성은 팸플릿『竹島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의 포인트』에서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이미 竹島[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6년에 발행한『竹島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도 똑같다. 그러나 이 주장을 지지하는 연구자는 아무도 없다.

시모조 마사오는 외무성의 주장을 비판하기를, "시마네(島根)현이 2월 22일을 '竹島[독도]의 날'로 삼은 것은 메이지(明治) 38년(1905년) 1월 28일

내각회의 결정에서 '무주지'였던 무인도를 竹島라고 명명하여 이를 선점(先占)하고 2월 22일자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시마네현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했기 때문이다. 외무성 팸플릿이 주장하듯이 에도시대(江戶時代)에 竹島[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메이지시대에 이를 재확인했다는 견해를 취하지 않는다"[12]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외무성의 주장을 지지한다. 그 이유는 외무성과 달리, "고유영토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외국에 의해 지배당한 일이 없는 영토를 말하는 것이며, 竹島[독도]는 1905년부터 일본의 실효지배 하에 있었다. 무주지를 편입했던 일본은 竹島[독도]를 고유영토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13]라는 것이다. 시모조는 자주 자기 견해를 아무 설명도 없이 변경하지만 이 견해만은 흔들림이 없다.

또한,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는 쓰카모토 다카시는 2010년에는 독도를 무주지로 보고, "竹島[독도]는 일본에 의한 편입 조치 시점에서 일·한 어느 쪽 나라에서도 '고래의 영토'가 아니라 한국(혹은 다른 나라)에 의한 선점도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국제법상 무주지였다고 할 수 있다"[14]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쓰카모토는 2017년에는 앞의 주장을 잊은 듯이 견해를 바꾸어 일본은 17세기에 竹島[독도]에 대해 역사적 권원을 가졌으나 영유권까지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적 권원은 그 후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경합하는 타국에 영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12) 下條正男,「歷史認識問題としての竹島問題を何故、解決できないのか」,『歷史認識問題硏究』4号, 2019, 111쪽.

13) 下條正男,「実事求是、第20回「東北アジア歷史財団」の愚挙」,『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硏究報告書』2009年度, 2011, 34쪽.

14) 塚本孝,「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国際法の適用事例」,『東アジア近代史』, 2000, 89쪽.

> 17세기 일본인이 竹島[독도]에서 어렵을 하고 있던 것에 관해 말하자면, 민간인이 단지 섬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만으로는 국가의 영유권원이 발생하지 않으나, 오야(大谷)·무라카와(村川) 양가가 활동한 경우는 정부가 특별히 허가했으므로 당해 허가를 국가 행위로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앞의 겐로쿠(元祿)기 울릉도 출어를 둘러싼 일·조 교섭에 관련하여 행해진 막부(幕府)의 조회에 대해 돗토리(鳥取)번이 마쓰시마(오늘날의 竹島[독도])는 (돗토리번이 다스리는) 이나바(因幡)·호키(伯耆) 양국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회답한 기록이 있으므로 일본의 영유의사가 얼마나 공고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없는 것이 아니다. 또한 울릉도 도항 금지 후에도 오늘날의 竹島[독도]로의 도항이 금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울릉도로 갈 일이 없어졌던 결과(오늘날의 竹島[독도]도 해만으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그 후 200년에 걸쳐 竹島[독도]에서 정부가 공인한 어렵의 기록이 없다‥‥[중략]
>
> 일본의 竹島[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은 만약 실효적 점유에 의한 영토 주장이 생긴다면 이것에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나, 경합하는 주장이 없을 경우 영유권을 확립하기에 충분하더라도, 분쟁이 생길 경우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근대적인 권원에 의해 치환, 보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15]

이처럼 쓰카모토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권원이 지속적이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20세기에 근대적인 권원으로 치환되고서야 영유권이 확립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케우치는, "늦어도 17세기 말에는 우리나라[일본]의 竹島[독도] 영유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 팸플릿이 말하는 견해는 성립되지 않는다"[16]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① 1696년 막부는 다케시마·마쓰시마(독도)가 돗토리(鳥取)번에 소속되지 않는다는 돗토리번의 회답서를 바탕으로 하여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으므로 금지령은 마쓰시마 도해 금지를 함의한다, ②

15) 塚本孝, 「国際法的見地から見た竹島問題」、『不条理とたたかう』, 拓殖大学, 2017, 141-142쪽. 인용문에서 쓰카모토의 주기는 생략했음.
16) 池内敏, 앞의 책, 2016, 81쪽.

다케시마 도해가 금지되었다면 마쓰시마의 활용은 경제적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었다.

3. '마쓰시마 도해허가'설

일본에서 둘째 쟁점은 쓰카모토 다카시가 주장하는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이다. 만약 마쓰시마(독도)에서의 어렵이 막부의 허가 아래 행해졌다면, 막부는 마쓰시마에 대해 영유의사 혹은 탈취 의도를 가지고 주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효과를 노리고 일찍이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는 막부가 17세기 중엽에 '마쓰시마 도해 면허'를 발급했다고 주장했다.[17] 이런 견해를 바탕으로 하여 외무성은 한국정부에 보낸 「일본정부견해 4」(1962.7.)에서 처음으로 竹島[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이 면허의 존재를 최초로 부정한 자가 바로 쓰카모토 다카시다.[18] 그러나 쓰카모토는 2011년에는 도해면허 대신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을 주장했다.[19] 그 근거는 일찍이 가와카미가 도해면허설 근거의 하나로 삼았던 가메야마 쇼자에몬(龜山庄左衛門)의 서장이다. 쓰카모토는, "오야·무라카와 양가와 막부 사이를 중개하고 있던 아베 시로고로(阿倍四郎五郎)라는 막부 관료(旗本)의 가신인 가메야마 쇼자에몬이 오야 규에몬 가쓰자네(大谷九右衛門勝實)에게 보낸 서간(1660)에서 내년부터 오야의 배가 마쓰시마로 도해할 일에 대해 시로고로가 로주(老中)[20]의 내의(內意)를 얻었다고 했으므로 기록상 1661년 이후에는 오늘날의 竹島[독도]에 대해서도 막부

17) 川上健三, 『竹島の歷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73쪽.
18) 塚本孝,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 244号, 1994, 1쪽; 同第2版(289号), 1996, 2쪽; 同第3版(701号), 2011, 2쪽.
19) 위의 책 제3판의 주기6(2쪽)에, "정식으로 [마쓰시마 도해가] 허가된 시기는 寛文元(1661)년쯤이라고 고증되고 있다. 川上, 前揭書, 73－83쪽" 이라는 글이 있다.
20) 로주는 평상시 막부의 최고 집권자들이며, 3-4명으로 구성된다.

의 공인 하에 도항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21]라고 주장했다.

이 설에 대해 이케우치는, "이름도 분명치 않은 모 로주의 '내의'를 가지고 '막부의 공인', '막부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 폭론이다. 더구나 이 사료가 말한 '내의' 그 자체가 아베 시로고로 마사유키의 재량으로 그렇게 말했을 뿐인, 가공의 작위 가능성조차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가와카미 자신이 말하고 있다. 이런 공소(空疎)한 자료 해석으로 외무성 견해의 '구멍 메우기(穴埋め)'를 하는 것은 무리한 일"[22]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이케우치는, "[쓰카모토는] 마쓰시마 도해에도 막부의 허락·공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어이 논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 같다. 그러나 역사사실은 사료로부터 구축해야 한다"[23]고 주장하면서 '로주의 내의'를 철저히 규명했다. 이케우치는 '로주의 내의를 얻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 문구는 호주가 바뀌어 얼마 되지 않은 아베 가문이 종래대로 오야·무라카와 양가를 조율하는 지위에 머물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 로주의 권위를 이용한 장식 문구에 불과하다, '로주의 내의'를 역사적 사실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24] 이에 대한 쓰카모토의 반론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로주의 내의'에 관한 가메야마 서장의 글은, "내년부터 다케시마 안의 마쓰시마로 당신의 배가 건너가게 될 일에 관해 선년에 시로고로가 로주님의 내의를 얻었습니다"[25]라는 것이다. 이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막부 관료나 도해 당사자들은 마쓰시마를 다케시마 안에 있는 섬, 즉 다케시마의 부속 섬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 서장 외에도 오야 가문의 기록에 마쓰

---

21)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竹島問題100問100答』, ワック, 2014, 142쪽.
22) 池内敏, 2016, 앞의 책, 366쪽.
23) 池内敏, 「17世紀竹島漁業史のために」, 『名古屋大学人文学研究論集』 第2号, 2019a, 16쪽.
24) 池内敏, 「老中の内意」考」, 『日本史研究』 682号, 2019b, 67쪽.
25) 원문은, "来年より竹嶋之内松嶋へ貴様舟御渡之筈ニ御座候旨 先年四郎五郎御老中様へ得御内意申候"이다. 가메야마 서장은 東京大学史料編纂所가 소장하는 『大谷氏舊記』 三에 사본이 게재되어 있다.

시마는 “다케시마 도해 항로에 있는 마쓰시마(竹嶋渡海筋松嶋)”, “다케시마 근처의 소도(竹嶋近所之小嶋)” 등으로 기록되어 왔다. 따라서 다케시마 도해면허를 가진 어민들이 다케시마의 부속 섬, 혹은 길목에 있는 마쓰시마로 도해하는 것은 막부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었다. 실제로 무라카와 가문은 아무 허가 없이 마쓰시마로 도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메야마 서장에서 볼 수 있듯이 무라카와가 아베 및 그 가신을 움직여 오야 가문을 마쓰시마 도해 사업에 끌어들이려 한 것은 제약이 많은 마쓰시마 어렵이 오야 가문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설득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오야 가문도 다케시마에서의 강치 어렵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가메야마의 설득을 받아들여 마쓰시마에서의 어렵을 1661년부터 시작한 것이다.[26]

4. ‘다케시마(울릉도)도해금지령’

일본에서 셋째 쟁점은 1696년(元祿 9년) 막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의 해석을 둘러싼 문제다. 막부는 ‘다케시마 일건’(울릉도쟁계)의 결과 돗토리번에 다케시마로의 도해를 금지하고, 이를 알리는 외교문서를 쓰시마번으로 하여금 조선 정부에게 보내게 하였다. 이 도해금지령에 마쓰시마의 이름이 없었으므로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금지되었는지 여부가 일본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일본 외무성 팸플릿의 견해를 지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위의 [1699년 조선에 전달한] 구상지각(口上之覺)에 있듯이 막부가 도항을 금지한 것은 “근래 조선인도 도해하고 (양국 어민들이) 섞였던” 것이

26) 朴炳涉,「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北東アジア文化研究』35号, 2012, 24-25쪽.

> 문제였기 때문이며, 오늘날의 竹島[독도]에 관해서는 그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도해 금지의 대상은 과거의 다케시마(울릉도)이며, [외교부 팸플릿 주장처럼] 울릉도 (방면)이라고 해서 오늘날의 竹島[독도]를 포함시킬 수 없다.[27]

이에 대해 이케우치는 도해금지령이 돗토리번의 회답, 즉 다케시마·마쓰시마(독도)는 돗토리번 영지가 아니라는 회답에 근거하여 내려졌으므로 금지령의 글에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금지령은 마쓰시마로의 도해금지를 함의한다고 주장했다.[28] 이케우치가 말하는 회답서는 『다케시마 문서(竹嶋之書附)』에 기록된 돗토리번의 첫째 회답서다. 돗토리번은 로주의 하문에 대해 겐로쿠 8년(1695) 12월 25일, "다케시마는 이나바(因幡)·호키(伯耆)의 부속이 아닙니다···다케시마·마쓰시마, 그 외 양국[이나바국 및 호키국]에 속하는 섬은 없습니다"[29]라고 회답한 것이다.

이 회답서에 등장한 마쓰시마에 관해 로주는 돗토리번에 두 번째 하문을 했는데 이 회답서에 대한 이케우치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 이 회답서는 "마쓰시마는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듣고 있습니다"[30]라고 썼는데, 이케우치는 '어느 나라'를 이나바국과 호키국이라고 좁게 해석하고, 돗토리번은 "마쓰시마는 이나바·호키, 어느 쪽 나라에도 부속된 것이 아닙니다"[31]라고 회답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쓰카모토 다카시는 '어느 나라'는 이나바·호키 양국이나, 혹은 앞의 「회답서」에서 마쓰시마에 관한 단정적인 대답 형식과의 차이로 보아 일본의 다른 나라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

27) 塚本孝, 「竹島領有権をめぐる韓国政府の主張について」, 『東海法学』 52号, 2016, 74(85)쪽.
28) 池内敏, 2016, 앞의 책, 75-76쪽.
29) 『竹嶋之書附』(鳥取縣立博物館所藏)의 原文은, 「竹嶋は因幡伯耆附属にては無御座候···竹嶋松嶋其外両国え附属の嶋無御座候事」.
30) 원문은, "松島は何れの国え付候島にても無御座由承候" 이 글은 『竹嶋之書附』, 「元禄九年正月廿八日小谷伊兵衛差出候竹嶋之書附」 및 『礒竹島覺書』, 松平伯耆守의 「覺」에 기록되고 있다.
31) 池内敏,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27쪽; 池内敏, 2016, 앞의 책, 75쪽.

는 뜻을 말한 것으로도 해석된다고 주장하고[32] 확정적인 결론을 내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다케우치 다케시(竹内猛)는 돗토리번은 자기 영지에 관해서는 첫 번째 회답서처럼 단정적으로 회답할 수 있었으나, 두 번째 회답서는 돗토리번 외 영지에 관한 것이므로 전문(伝聞)식으로 회답했다고 보아야 하며, '어느 나라'는 '일본의 어느 나라'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33] 이처럼 돗토리번의 두 번째 회답서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가장 잘 아는 돗토리번이 마쓰시마(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밝힌 자료다. 이들 돗토리번의 두 회답서를 바탕으로 막부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으므로 금지령에는 마쓰시마도 함의되고 있는 것이다.

쓰카모토의 주장이 성립되지 않다는 것은 다음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도해금지령 직후 가령 오야 등이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돗토리번 혹은 막부에 신청했다면 허가될 것인가? 돗토리번은 마쓰시마가 돗토리번은커녕 일본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듣고 있다고 막부에 보고했으므로, 그렇다면 돗토리번 혹은 막부는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쓰카모토의 주장은 너무 무리한 듯하다.

5. 지샤부교(寺社奉行)의 마쓰시마 인식

막부의 마쓰시마(독도) 인식을 직접 드러내는 자료는 17세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18세기에는 존재한다. 그것은 이케우치가 2015년에 발굴한 『무

32) 塚本孝, 「竹島関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圖(上)」, 『レファレンス』 411号, 1985, 87쪽. 다만 쓰카모토는 다음 논문에서 '어느 나라[지방]'를 아나바·호키 두 나라라고 해석했는데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塚本孝, 「元祿竹島一件をめぐって」, 『島嶼研究ジャーナル』 2巻2号, 2013, 43쪽.

33) 竹内猛, 『竹島＝独島問題：「固有の領土」論の歴史的検討』 前編, 報光社, 2010, 45쪽.

라카와가 문서(村川家文書)』[34]이다. 이 자료를 둘러싸고 이케우치·쓰카모토 논쟁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본다.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으로 인해 생업을 잃은 오야 가문은 이를 대신할 이권을 얻으려고 1740년 에도로 가서 지샤부교에게 탄원했다. 막부의 3대 부교의 하나인 지샤부교는 사찰을 감독할 뿐만 아니라, 간죠부교(勘定奉行), 에도마치부교(江戸町奉行)들과 더불어 막부의 최고 사법기관인 평정소(評定所)를 구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고위 직함이다.

『무라카와가 문서』에 따르면, 1740년(元文5년) 오야는 지샤부교 전원(4명)이 모인 회의에서 다케시마를 대신할 이권으로서 '오사카 회미(大坂廻米)'와 나가사키(長崎) '관물할부연중(貫物割符連中)'[35]에 참여하고 싶다고 청원했다. 이에 대해 지샤부교 일동은 오야 가문이 대대로 다케시마를 지배해온 것은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가 명해진 이후는 돗토리번 요나고(米子) 가로(家老)[36]로부터 녹봉이라도 받아 왔는가?"[37]를 오야 가쓰후사(大谷勝房)에게 질문했다. 또한 지샤부교로부터 에도에 근무하는 나가사키 부교를 찾도록 지시받은 오야는 나가사키 부교를 찾아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 금제"를 말하고, 그 후 상황을 설명했다. 이케우치는 이런 글에서 알 수 있듯이, 막부의 최고 행정기관(幕閣)과 오야 가쓰후사는 모두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금제'로 이해했던 것이라고

34) 「延享元年子五月於江戸表奉願上候一件」, 『村川家文書』(写), 米子市立圖書館所蔵, 43-5 5丁.

35) '관물할부연중'은 아래 문헌에 따르면 청국에 수출하는 건물(마른 전복, 해삼, 상어 지느러미 등 소위 다와라모노(俵物))의 집하 등을 독점적으로 허가받은 상인 조직을 가리킨다. 大西俊輝, 2011, 『第三部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136쪽.

36) 가로는 각 번의 최고 집권자이며 3-6명 정도로 구성된다. 돗토리번의 경우 가로의 한사람 아라오(荒尾)씨가 요나고 성에 상주하여 자주적인 정치(自分手政治)를 행했다.

37) 원문은, "次ニ御尋之趣 竹嶋松嶋両嶋渡海禁制ニ被仰出候以後ハ伯州米子之御城主ヨリ御憐憫ヲ以渡世仕罷在候由願書ニ書記シ候段 然者扶持杯請申候哉ト御意被成候". 池内敏, 2015, 「「国境」未満」, 『日本史研究』 630号, 16-18쪽.

주장했다.[38]

이에 대해 쓰카모토는 지샤부교의 발언은, "원서에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 금제가 내려진 후는 하쿠슈(伯州, 호키국) 요나고 성주가 도와주셔서 살아 왔습니다'라고 쓰고 있는데 녹봉이라도 청원했느냐"는 뜻이며,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라는 글은 지샤부교가 오야의 탄원서에서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39]

쓰카모토의 이의에 대해 이케우치는 오야의 청원서 원문을 살펴보고, 원문에는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 금제'라는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샤부교도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 금제"로 인식하여 말한 것이며, 쓰카모토의 해석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쓰카모토는 자료에서 "녹봉이라도 청원했느냐"라고 해석했으나, 이는 "녹봉이라도 받았느냐"로 해석해야 한다고 이케우치는 지적했다.[40]

이 반론에 대해 쓰카모토는 녹봉에 관해서는 '청원했느냐'를 '받았느냐'로 바꾸었으나, 지샤부교의 인식에 관해서는, "문서 전체를 통독하면 부교 쇼는 [오야가 제출한] 유서(由緖)의 확인을 위해 과거 쇼군(將軍)님을 배알한 기록을 조사한 것(A12) 이외는 특별히 독자적인 정보를 쓴 것이 아니며, 오야 규에몬 가쓰후사(大谷九右衛門勝房)가 제출한 자료에 의거한 것처럼 보인다.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 도해 금제가 막부의 인식을 나타내는지, 또한 역사 사실로서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금지되었는지는 아직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41]라고 주장했다.

지샤부교의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 금제"라는 발언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이를 드러내는 사료는 발굴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지샤부

38) 池内敏, 「国境」未満」, 『日本史硏究』 630号, 2015, 16-18쪽.
39) 塚本孝, 2016, 앞의 글, 73(86)-72(87)쪽.
40) 池内敏, 「日本と韓国の「固有領土」論」, 『第1回 芳村獨島硏究会 国際学術会議論文集』 2018, 122-124쪽.
41) 塚本孝, 「大谷家文書「乍恐申上候口上之覚—両島渡海禁制に関連して」, 『第4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硏究」最終報告書』, 島根県, 2020, 56쪽.

교는 늦어도 오야를 만났을 때 "다케시마·마쓰시마 양도의 도해 금제"라는 인식을 가졌음은 확실하다. 또한 쓰카모토는 마쓰시마로의 도해가 금지되었는지 여부를 문제시하고 있으나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 마쓰시마의 이름이 없어도 금지령이 마쓰시마로의 도해금지를 함의하고 있음은 이케우치가 지적한 대로다.

6. '덴포(天保) 다케시마 일건'

일본에서 다섯째 쟁점은 '덴포 다케시마 일건'을 둘러싼 문제다. 쓰카모토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 후도 마쓰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식되어 왔다는 근거로써 이 사건을 인용했다.

'덴포 다케시마 일건', 일명 '하치에몬 일건'이란 덴포 기 이와미국(石見國) 하마다(濱田)에서 회선업(廻船業)을 경영하는 이마즈야 하치에몬(今津屋八右衛門)[42]등이 다케시마(울릉도)로 밀항하여 벌목 등을 하여 밀매한 사건이다. 1836년 막부는 하치에몬 등을 체포해 처형하고 다음해에는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다시 내렸다. 하치에몬은 오사카마치부교쇼(大坂町奉行所)에 의해 적발되었을 때 하마다번(濱田藩) 가로의 가신 하시모토 산베(橋本三兵衛)의 시사대로 다케시마로 도항한 것이 아니라 마쓰시마로 도항한 것이었다고 발뺌을 시도했다. 이 때문에 재판 판결문에서 특히 마쓰시마가 언급되어,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에는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건너가고"라고 기록되었다.

이 문구에 주목한 일본 정부는 일찍이 한국 정부에 보낸 「일본정부견해3」

42) 하치에몬의 옥호(屋號)는 자료에 따라서는 아이즈야(會津屋)라고 하지만, 하치에몬은 공술조서 『다케시마 도해일건기』에서 스스로를 이마즈야(今津屋)라고 칭했다. 이를 포함하여 여러 사료를 고려하면 이마즈야가 맞다. 자세한 것은, 森須和男, "天保竹島一件顚末," 『郷土石見』 102号, 2016, 33쪽.

(1956.9.20)에서 이 판결문을 인용하여 마쓰시마로의 도해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므로 마쓰시마는 여전히 일본 영토로 생각되어 왔다고 주장하고, 고유영토론의 유력한 근거의 하나로 삼았다. 그러나 1965년 이후 외무성은 일본에 유리할 터인 '덴포 다케시마 일건'에 대해 침묵한 채 아무 말이 없다. 대신 외무성 견해를 이어받은 연구자가 쓰카모토다. 그는 판결문에, "가장 가까운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명목으로 다케시마로 건너가고" 운운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는 다케시마(울릉도)와의 대비에서 마쓰시마가 본방에 소속된다는 인식이 있었던 증거의 하나가 된다고 주장했다.[43]

쓰카모토의 견해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는,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바탕으로 발령되었기 때문에 이때에도 계속해 일본인의 마쓰시마 도해가 금지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하치에몬이 처형당한 사실은 하시모토의 시사가 통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44]라고 반론했다.

그러나 하치에몬이 처형당한 이유는 다케시마로의 밀항 때문이며 마쓰시마의 소속 문제와의 관련성은 분명하지 않다. 이케우치의 반론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는지, 쓰카모토는 여전히 하치에몬에 대한 판결문을 근거로 하여, "[겐로쿠 기] 울릉도로의 도해금지 후로도 오늘날의 竹島[독도]로의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으며, 일본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다"[45]라고 주장했다.

이케우치는 이번 도해금지령이 겐로쿠 기의 금지령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근거는 금지령의 문구에 있다. 금지령은, "위의 섬[다케시마]은 과거 하쿠슈(伯州) 요나고 사람들이 도해하여 어렵 등을 했는데, 겐로쿠 기 [쇼군이] 조선국에 건네주셨던 이후 도해 정지를 명한 곳이다. 이국으로의 도해는 모두 중대한 금제다. 금후 위의 섬도 똑같이 명심하여

43) 塚本孝, 1994, 앞의 책, 3쪽; 同 第2版(289号), 1996, 4쪽; 同 第3版(701号), 2011, 3쪽.
44) 池内敏, 2016, 앞의 책, 106-107쪽.
45) 塚本孝, 2017, 앞의 글, 141쪽.

도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했다.

그런데 이 문언에서는 덴포 기 막부는 겐로쿠 이전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였다고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막부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오해한 채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다. 따라서 덴포 기 막부는 마쓰시마에 대한 겐로쿠 기 막부의 인식을 반드시 올바르게 이어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46] 그렇다면 겐로쿠 기 막부의 마쓰시마 인식을 덴포 기 막부가 올바르게 이어받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이케우치의 반론은 충분하지 않다.

이 문제에 관해 박병섭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47] 하치에몬이 '마쓰시마로 도항했다고 진술했으므로 막부는 마쓰시마의 소속을 판단해야 했으며, 아래와 같이 조사하고 결론을 내렸다. 먼저 하치에몬 등을 취조한 오사카마치부교쇼는 다케시마·마쓰시마 두 섬을 조선 영토로 판단하고, 이를 표시하는 지도 「다케시마 방각도(竹嶋方角圖)」<그림 2>를 시험적으로 작성하고 하치에몬의 공술조서 『다케시마 도해 일건기(竹嶋渡海一件記)』에 첨부했다. 이 지도는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본토와 같이 붉은 색으로 채색하여 일본 영토와 구별했다. 부교쇼는 하치에몬이 가령 마쓰시마로 도항했더라도 거기도 조선 영토이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다음에 하치에몬을 취조한 평정소는 「다케시마 방각도(竹嶋方角圖)」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쓰시마번에게 다케시마·마쓰시마의 소속 등을 문의했다. 이에 대해 쓰시마번은, "조선 강원도 울진현 동해 가운데 울릉도라는 낙도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다케시마라고 부릅니다···[중략] 마쓰시마는 겐로쿠 연간에 로주 아베 분고노카미(老中阿部豊後守)님이 하문하셨을 때 '다케

46) 오해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이케우치는 1740년대 오야 가문이 막부에 생업 보장을 청원한 데 있다고 보았으나, 박병섭은 아래 논문에서 '덴포 다케시마 일건'에 유래한다고 주장했다. 朴炳渉, 「天保竹島一件における松島(独島)に対する日本の領有権論争」, 『韓日關係史研究』 67輯, 2020, 254-256쪽.

47) 朴炳渉, 「元祿·天保竹島一件と竹島＝独島の領有権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40号, 2015, 36-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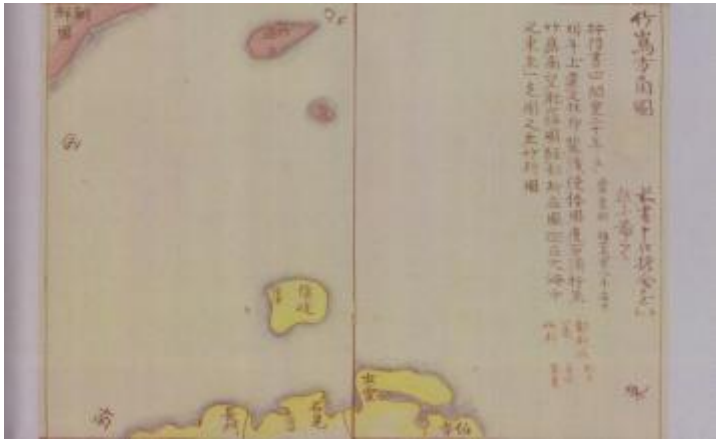

<그림 2> 오사카마치부교쇼가 작성한 「다케시마 방각도」

시마 근처에 마쓰시마라는 섬이 있으며, 거기에도 일본인들이 건너가 어렵을 한다고 아랫것들의 풍설로 듣고 있습니다'라고 아뢴 것이 기록에 보입니다, 다케시마처럼 일본인이 건너가서 어렵을 하는 것이 정지된 섬이라고 생각되지만 단정적으로 회답하기 어렵습니다, 조선 지도를 가지고 생각하면 울릉·우산 두 섬이 있다고 보입니다, 위의 다케시마로 저쪽 나라 어민들이 건너가고 목재가 많은 섬이라고 들었고, 배를 만들기 위해 건너간다는 것이며, 살고 있는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48]라고 회답했다. 이 회답으로 인해 평정소는 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판단했을 것이다. 평정소 관계자는 「다케시마 방각도」를 바탕으로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그린 지도<그림 3>를 작성해 『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朝鮮竹嶋渡航始末記)』에 첨부했다. 이 지도도 다케시마·마쓰시마를 조선 본토와 같이 붉은 색으로 채색하여 일본 영토와 구별했다.

이들 지도 2장은 오래전부터 일본에서는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일본인 연구

48) 「대마도 종가문서」(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고문서 #4013; 池內敏, 「一七～一九世紀鬱陵島海域の生業と交流」, 『歷史学硏究』 756号, 2001, 30쪽; 池內敏, 2012, 앞의 책, 69쪽.

<그림 3>『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 부속 지도

자들은 아무도 지도의 채색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2012년 박병섭이 채색을 언급한[49] 후 비로소 다케우치 다케시가 2014년에 이를 확인하고 논문에서 언급했다.[50] 이들 자료로 인해 덴포 기 막부가 마쓰시마를 조선 영토로 판단했음이 확실하므로 쓰카모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

49) 朴炳涉,「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北東アジア文化研究』35号, 2012, 28쪽.

50) 竹内猛,「竹島」編入当時の日本人の領土認識」,『郷土石見』, 95号 2014, 45-46쪽. 이 논문 53쪽에는 컬러 지도가 게재되어 있다.

7. 1877년 태정관 지령

일본에서 여섯째 쟁점은 메이지 시대 태정관 지령에 관한 문제로 논쟁이 가장 치열하다. 1877(明治 10)년 3월 일본의 최고 통치기관인 태정관은 내무성이 제출한,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질문서(日本海內竹島他一島地籍編纂方伺)」에 대해 '다케시마 외 일도'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을 내렸다.

이 지령에 있는 '다케시마 외 일도'가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에 대해 시모조 마사오는 자기주장을 아무 설명도 없이 자주 바꾸었다. 그는 ① 2004년 '외 일도'는 어느 섬을 가리키는지 불명이라고 말했으나, ② 2006년 '외 일도'는 마쓰시마 즉 竹島[독도]라고 말했다. 그런데 ③ 2007년 3월 그는 시마네현이 인식한 '외 일도'는 竹島[독도]이지만 태정관이 인식한 '외 일도'는 울릉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④ 같은 해 7월에는 시마네현도 태정관도 '외 일도'를 울릉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51] ⑤ 최근 시모조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태정관 지령을 문헌 비판 없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케시마 외 일도'는 「이소타케시마 약도(磯竹島略圖)」에 그려진 이소타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현재 竹島[독도]) 가 된다. 그런데 "당시 외래 지도 및 해도에는 竹島(아르고노트 섬)와 마쓰시마(울릉도)를 그린 것과, 마쓰시마(울릉도)와 리앙쿠르 열암(오늘날의 竹島[독도])를 그린 것 등 두 종류가 있었다. 이 사실은 태정관이 전자의 지도 및 해도에 의거하여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다케시마 외 일도'의 일도(마쓰시마)는 울릉도가 된다"[52]는 것이다. 이처럼 시모조는 주장을 네 번이나 바꾸었으며 정견이 없다. 또한 변경의 이유를 밝히지도 않았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당초 '외 일도'는 마쓰시마 즉 오늘날의 竹島(독도)를

51) 朴炳涉, 「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 『獨島硏究』 第4号, 2008, 89-90쪽.
52) 下條正男, 『韓国の竹島教育の現状とその問題点』, 第4期島根県竹島問題硏究会, 2018, 59-64쪽.

가리키며, 마쓰시마도 형식적으로 일본과 관계없는 것이 되었다고 주장했다.[53] 그러나 최근에는 견해를 바꾸어,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질문서에 기록된 '외 일도'는 마쓰시마를 가리키지만 태정관 지령이 말하는 '외 일도'는 울릉도를 가리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내무성이 태정관에 제출한 질문서에 첨부된 서류는 17세기 말의 일·조 왕복 문서 등이며 오늘날의 竹島[독도]를 언급한 것이 없었다. 질문서 자체가 다케시마(현재 울릉도) 관할에 관해 시마네현으로부터 별지의 질문서가 있어서 조사한바 운운이라고 하고 있다. 즉 "내무성은 시마네현 질문서 표제의 '외 일도'나 설명 자료에 있는 '마쓰시마'의 기사를 무시하고 있다." 한편 그 당시 다케시마도 마쓰시마도 울릉도를 가리켰으며, 1881년에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일본해 내 마쓰시마 개간의 일에 관한 질문서(日本海内松島開墾之儀に付伺)」에 대한 외무성 의견서에 "조선국 울릉도 즉 다케시마 마쓰시마"라고 기재되었다. 또한 다음해 내무성이 시마네현에 보낸 회답서에 "서면 마쓰시마의 건은 최근 지령대로 본방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기재되었다. 이처럼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1877년 태정관 지령은 다케시마(현재 울릉도) 및 명칭 상 또 하나의 섬(마쓰시마, 이것도 울릉도)에 관해 본방과 무관하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쓰카모토는 주장했다.[54]

쓰카모토는, "내무성은 시마네현 질문서 표제의 '외 일도'나 설명 자료에 있는 '마쓰시마'의 기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의문이다. 태정관 기록인『태정류전(太政類典)』제2편 제96권에 기록된 문서「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를 판도 외로 정함(日本海内竹島外一島を版図外と定む)」을 보면 거기에는 시마네현이 내무성에 제출한 질문서 전체가 필사되어 있다. 따라서 내무성이 시마네현 질문서 전체를 첨부문서로 제출한 것이 분명하다. 태정관은 시마네현 질문서를 필사한 가운데 마쓰시마에

53) 塚本孝, 1994, 앞의 글, 5쪽.
54)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4, 앞의 책, 191-192쪽.

관해 “다음에 일도가 있다. 마쓰시마라고 부른다. 주위 30정[3.3km]정도이며 죽목(竹木)이 드물다. 또한 물고기와 짐승이 난다”라고 『태정류전』에 기록했다. 따라서 내무성 및 태정관은 마쓰시마에 관한 위의 설명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케시마 외 일도’를 일본과 관계없다고 지령한 것이 확실하며, 쓰카모토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다.

쓰카모토의 견해에 대해 이케우치가 철저히 반론했다. 이케우치는 내무성 질문서에 첨부된 일련의 문서와 지도에서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를 묶어 질문서를 제출한 것이 분명한 이상 내무성의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질문서」라는 제목의 질문서가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가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를 가리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케우치는 일본 정부가 마쓰시마를 잘 파악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내무성 지리국(地理局)이 작성한 『이소타케시마 각서(磯竹島覺書)』를 거론하여 반론했다. 이 문서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의 계기가 된 돗토리번 회답서 등을 수록하고, 다케시마·마쓰시마는 돗토리번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내무성은 마쓰시마에 관해서도 분명히 조사를 했으며, 중앙 정부는 다케시마와 마쓰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주체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55]

그러나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소타케시마 각서』가 작성된 시점이 확실히 내무성이 태정관에 질문서를 제출한 3월 17일 이전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케우치의 약점을 박병섭이 보완했다. 이케우치가 인용한 문헌은 표지에는 ‘磯竹島覚書/地理局’이라고 쓰고 있으나, 이런 문서의 표지는 허물어지면 수리할 때 바뀌기 때문에 안의 표지(内表紙)가 더 중요하다. 안의 표지는 ‘磯竹島覚書 全’이라고 쓰고 옆에 주인(朱印) ‘지리료인(地理寮印)’이 찍혀 있다. 지리료는 1877년 1월 11일에 이름을 지리국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지리국의 『이소타케시마 각서』는 내무성이 질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작성되었음이 확실하므로 이케우

55) 池内敏, 2016, 앞의 책, 112-114쪽.

치의 주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56]

그런데 그것보다 더 결정적인 자료는 같은 국립공문서관이 소장한 또 하나의『이소타케시마 각서 완(磯竹島覚書 完)』이다.[57] 이 자료에는 안의 표지가 없으며 책 마지막에 '明治八[1875]年八月八日 中邨元起'라고 쓰고 주인(朱印) '元起'가 찍혀 있다. 이 외의 내용은 지리국의『이소타케시마 각서』와 거의 같다. 나카무라 겐키(中邨元起)는 내무성 지리료 지지과에서 일본 지지를 편찬하는 과정에서『이소타케시마 각서 완』을 편찬한 것이다. 그런데 지리료 가운데 나카무라가 속한 지지과만은 1875년 9월 태정관 정원 수사국(正院修史局)으로 옮기고 지지괘(地誌掛)가 되었다. 그런데 다음 해 9월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 외 일도'에 관한 문의가 내무성에 제출되었다. 이를 심사할 때 내무성 지리료는 태정관에 있는『이소타케시마 각서 완』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에 그 사본『磯竹島覚書 全』(표지는『磯竹島覚書 地理局』)을 작성했다고 보인다. 이 자료 등을 바탕으로 내무성은 '다케시마 외 일도' 즉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과 관계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는 질문서를 태정관에 제출했다. 쓰카모토는 "태정관이 내무성의 판단과 따로 독자적인 조사를 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고 썼으나,[58] 내무성 지지과를 받아들이고『이소타케시마 각서 완』을 보유한 태정관이야말로 다케시마·마쓰시마를 가장 잘 아는 기관이었다. 이로 인해 태정관은 내무성의「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질문서」에 대해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3일 만에 신속히 '다케시마 외 일도'를 일본과 관계없다는 지령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결국 내무성 및 태정관 등 일본의 중앙정부는 주체적으로 마쓰시마(독도)의 소속을 판단하여 일본과 관계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또한 이케우치는 태정관 등이 주체적으로 마쓰시마를 판단했음을 드러내는 자료로『지학잡지』를 들었다. 즉 그는 1905년 지리학자 다나카 아카

56) 朴炳涉, 2016b, 앞의 글, 305쪽.
57) 朴炳涉,「明治政府の竹島＝独島調査」,『北東アジア文化研究』41号, 2016a, 55-56쪽.
58) 塚本孝, 2013, 앞의 글, 50쪽.

마로(田中阿歌麻呂)가 학술지 『지학잡지』에 쓴 기사를 제시했다. 이 내용은, “메이지 초년에 [태정관] 정원 지리과[지지괘의 잘못?]에서 그것(竹島[독도])이 본방의 영유임을 완전히 부인했으므로 그 후 출판된 많은 지도는 그 소재를 제시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다. 이로써 이케우치는 「일본해 내 다케시마 외 일도 지적 편찬 질문서」의 해석과 평가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59]

결국 쓰카모토의 견해, 즉 내무성이 시마네현 질문서에 있는 마쓰시마를 무시했다거나, 태정관은 독자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등의 견해는 완전히 부인된다. 이런 쓰카모토의 자세를 이케우치는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쓰카모토의 ‘논증’의 문제점은 먼저 다케시마, 마쓰시마의 중대한 대치(代置)가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시대의 사료를 바탕으로 한 확정을 피하고 후대의 사료를 원용해서 잘못된 추리를 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케우치는, “쓰카모토는 자기의 논증 과정을 ‘사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은 사료를 자의적으로 잘라내고 그러모아 하나로 만듦으로써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논증’은 학문적인 영위가 아니다. 역사적 사실이 생기(生起)한 전후 관계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상상을 부풀린 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아니다. 불필요·부당한 혼란을 의논의 현장에 가져온 것뿐이다”[60]라고 엄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한 쓰카모토의 반론은 아직 없는 것 같다.

8. 1900년 칙령 제41호의 石島

일본에서 일곱째 쟁점은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에 기재된 石島다.

59) 池内敏, 2016, 앞의 책, 117쪽.
60) 池内敏, 2016, 앞의 책, 120-122쪽.

이 칙령은 울도군을 신설하고, 그 범위를 울릉전도, 죽도, 石島로 규정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 이 칙령의 의의를 시모조 마사오는, "만약 이 石島가 한국 측 주장대로 竹島[독도]라면 竹島가 시마네현에 편입된 1905년에 앞서 竹島는 한국 영토로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가 竹島[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한국 측 주장대로 위법 행위가 된다"[61]라고 주장했다. 또한 쓰카모토 다카시도 칙령이 말하는 石島가 독도라면, "일본이 竹島[독도]를 영토로 편입해서 시마네현의 관할로 한 1905년보다 앞서 이 섬을 울도군 관할 구역으로 한 것이 된다"[62]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石島가 독도인지의 여부는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일본인 연구자들은 石島를 독도라고 보았다. 가지무라 히데키(梶村秀樹),[63] 오니시 도시테루(大西俊輝),[64] 나이토 세이추(内藤正中)[65] 등이 그러하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2000년에는 石島를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와 관련시켜, "군수가 해도(該島[독도])를 '본군 소속'이라고 쓴 것은 앞의 칙령 제2조에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石島를 관할할 사' 라고 정한 것에 있다(石을 방언으로 독이라고 하므로 獨과 통한다고 한다)고 생각된다"[66]라고 주장하고 石島를 독도라고 보았다. 그러나 2016년 쓰카모토는 이 논문을 잊은 듯이, "[칙령 제41호] 원문에 기록된 것은 '石島'이며, 이를 독도(竹島)와 관련시키는 것은 한국 정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음운(音韻)변화설은] 칙령에서 '石島'라고 기록한 것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竹島[독도]는 예로부터 '우산(도)'가 아니었던가"[67]라고

61) 下條正男,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島根県会議, 2005b, 98쪽.
62)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4, 앞의 책, 194쪽.
63) 梶村秀樹, 「竹島問題と日本国家」, 『朝鮮研究』 182号, 1978, 23쪽.
64) 大西俊輝, 『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2003, 72쪽.
65)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 多賀出版, 2000, 177쪽.
66) 塚本孝,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国際法の適用事例」, 『東アジア近代史』 第3号, 2000, 89쪽.

쓰고 일본 외무성의 팸플릿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과거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다.

한편, 시모조는 石島에 대한 주장을 몇 번이나 바꾸었다. 그는 ①1999년에는 한국인은 독도를 몰랐으며 石島는 관음도라고 주장했다가, ②2004년에는 石島는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고, ③2006년에는 다시 石島는 관음도라고 주장했다.[68] 그러다가 ④2009년에는 石島를 '쌍항초(雙項礁)'로 보았다. 그러나 '쌍항초'는 관음도 동쪽에 있는 쌍정초(雙頂礁)의 오독이다. 이는 암초(暗礁)이며 石島가 아니다.[69] 시모조는 이 오류를 알았는지, ⑤최근에는 石島를 다시 관음도로 보았다.[70] 이처럼 시모조는 네 번이나 주장을 바꾸어 정견이 없다. 또한 주장을 바꾼 이유도 밝히지 않았다.

후나스기 리키노부(舩杉力修)는 石島를 관음도라고 주장했다. 그 논증법이 독특하다. 후나스기는 관광유람선을 타고 울릉도 주위를 일주한 결과, "울릉도 주변에는 바위가 많이 존재하고 있으나, 현지조사 결과 섬은 죽서(竹嶼), 관음도 외는 확인되지 않았다. 울릉도 주변에서는 섬과 바위가 구별이 안 된다는 한국 측의 주장은 분명히 틀린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石島는 관음도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밝혀졌다"[71]라고 주장했다. 학술적으로는 石島의 비정은 역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는 관광유람선에서 관찰한 것으로 石島를 비정했다. 후나스기의 주장은 학술적인 연구와는 무관할 것이다.

이케우치 사토시는 2012년, "石島가 다케시마[독도]와 일치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증명된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石島는 독도에 알맞다고

67) 塚本孝, 2016, 앞의 글, 68(91)쪽.
68) 朴炳渉, 「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 『獨島硏究』 第4号, 2008, 81-83쪽.
69) 朴炳渉, 「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 『獨島硏究』 第7号, 2009, 104쪽(일본어), 132-136쪽(한국어).
70) 下條正男, 『韓国の竹島教育の現状とその問題点』, 第4期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8, 73-74쪽.
71) 舩杉力修, 「絵図・地図からみる竹島(II)」,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07, 172쪽.

하는 발상은 1900년 당시에는 볼 수 없다"[72]라고 하여 '石島=獨島'설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유론(謬論)"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2016년 이케우치는 『민국일보』(1962.3.19)[73]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김윤삼 노인이 돌섬에서 강치잡이를 1894년경부터 했다는 회상은 자료적 가치가 반드시 높지는 않지만 칙령이 말하는 石島가 독도와 일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74] 문제점은 ①대한제국 학부가 발행한 지도에 보이는 우산도가 독도를 가리킨다면 칙령 제41호는 왜 '우산도'라는 명칭을 쓰지 않았는가? ②1906년 심흥택 보고서 등은 왜 칙령 제41호에 있는 石島 이름을 쓰지 않고 공문서에 '독도' 이름을 썼는지, 그 경위를 어떻게 정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관해 박병섭은 2010년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75] 石島와 돌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참고가 되는 것은 한국 각지에 있는 石島의 당시 호칭이다. 일본 수로부가 발행한 『조선수로지』 제2개판(1907) 및 『일본수로지』 제6권(1911) 등에는 한국 각지의 石島가 7개소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 중 5개소 石島에 일본어 후리가나가 달려 있어 당시의 호칭을 알 수 있다. 충청남도 비인만에 있는 石島 2개소에는 'トルソム'(도루소무)와 'マクソム'(마쿠소무), 경기도 한강구의 石島는 'トルソム'(도루소무), 황해북도 대동만의 石島는 'トリソム'(도리소무), 전라남도 소안군도의 石島는 'トヽクソム'(도토쿠소무)라고 후리가나가 달려 있다. 이처럼 '石島'는 모두 '석도'라고 음독(音読)된 것이 아니라, 훈독(訓読)되었다. 위에서 '도루소무'(トルソム)나 '도리소무'(トリソム)는 '돌섬'의 일본어 표기다. '마쿠소무'(マクソム)는 말단에 있는 섬이

72) 池内敏, 2012, 앞의 책, 304쪽 및 244쪽.
73) 기사의 날짜를 20일로 보는 논문도 있지만, 이케우치의 검토에 의하면 19일이 옳다고 한다. 池内敏, 2012, 앞의 책, 371쪽, 주기 (7).
74) 池内敏, 2016, 앞의 책, 184-185쪽.
75) 朴炳渉, 「明治時代の欝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2)」,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号, 2010, 45-54쪽.

라는 뜻인 '막섬'의 일본어 표기인 것 같다. 이는 같은 비인만에 있는 '도루소무'(トルソム)와 구별하기 위해 이런 호칭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라남도에 있는 '도토쿠소무'(トゝクソム)는 '독섬'의 일본어 표기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이 섬은 『한국지명총람(韓國地名總覽)』(1984)에도 '독섬(石島)'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돌섬 혹은 독섬의 한자 표기는 '石島'다. 이런 관행을 고려하면 칙령 제41호의 '石島'의 호칭은 훈독된 것으로, 주로 울릉도민의 다수를 차지한 전라도 사람들의 사투리로 '독섬', 때로는 표준어로 '돌섬'으로 호칭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광복 직후의 언론 보도에 오늘날의 독도를 '독섬(獨島)'이라고 표기한 예가 다수 있다.

또한, 일본 외무성 자료 『다케시마 어업의 변천(竹島漁業の変遷)』에 기록된 오쿠무라 료(奥村亮)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인은 랑코도(竹島[독도])를 '独島(トクソン[도쿠손])'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나, 내지인(内地人)과 대화할 때는 '랑코도'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 'トクソン'[도쿠손]은 독섬의 일본어 표기로 볼 수 있다. 오쿠무라 료 및 부친 헤이타로(平太郎)는 1921년경부터 조선인을 주력으로 하여 랑코도에 출어해 전복 등을 채취했던 어업자다. 오쿠무라 료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랑코도＝独島(도쿠손)=독섬이라는 관계가 성립되고, '도쿠손'은 '독섬'에 직결된다. 이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바위섬의 뜻으로 불렸던 '독섬' 혹은 '돌섬'이 칙령 제41호에 '石島'로 한자 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울릉도에서는 전라도 이외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독섬을 '石島'라고 한자로 표기하는 것이 외면되었는지, 한자 표기가 '獨島'로 변한 것 같다. '獨島'의 표기는 「군함 니타카 행동 일지」(軍艦新高行動日誌, 1904)에서 볼 수 있는 것을 비롯해서, 1906년 울도군수 심흥택(沈興澤) 보고서 및 이에 대한 참정대신 박제순의 지령 3호 등에서 볼 수 있다.[76]

한편, 칙령 제41호에 왜 우산도 이름이 없었는지 라는 의문에 대해 박병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77] 우산도는 '울릉도 쟁계'(겐로쿠 다케시마

76) 위의 글, 45-46쪽.
77) 위의 글, 53-54쪽.

일건) 이후 해금·수토정책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위치나 존재가 점점 모호해졌다. 1882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은 왕명을 받아 우산도를 탐색했으나 확인하지 못했다. 그는 울릉도민으로부터 우산도나 송죽도(松竹島)는 근방에 있는 작은 섬이라고만 듣고, 배로 울릉도를 일주했다. 또한 높은 곳에 올라가 주위를 바라보았지만 우산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竹島(댓섬)와 島項(섬목, 관음도)을 확인했을 뿐이다. 또한 울릉도에 사는 조선인과 일본인들이 1900년경 공동으로 우산도를 탐색했으나 발견할 수 없었다. 게다가 1913년에도 우산도 탐색 계획이 있었으나 앞의 우산도 탐색이 실패했던 것이 드러나서 계획이 중지되었다. 이처럼 관찬서에 자주 기재된 우산도는 대한제국 시대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전설의 섬으로 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소재를 알 수 없는 우산도는 칙령 등 법령에 게재할 수 없었다. 대신에 실재가 확인된 독섬이 칙령에 石島 표기로 기재되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증을 고려했는지 이케우치는, '石島=獨島'설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유론"이라는 견해를 수정했다. 그는 "돌섬(石島) - 독섬(石島/独島) - 독도(独島)라는 음운(音韻)변화설은 객관적이고 문헌적인 방증"[78]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케우치가 거론한 문헌은 오쿠무라 료(奥村亮)의 증언을 기록한 위의 『다케시마 어업의 변천』이다.

또한, 이케우치는 "칙령 제41호의 石島는 어느 섬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시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竹島[독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79] 이는 획기적인 변화다. 이케우치는 독도 문제에서 영향력이 큰 역사학자이므로 이 소식은 주목을 받았다. 시모조 마사오는 이 소식을 '한국 측의 숨은 선전 공작'이라고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

78) 池内敏, 『日本人の朝鮮観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2017, 242쪽; 池内敏, 「竹島(獨島)の活用実態と領有権」, 『獨島研究』 23号, 2017, 278쪽.

79) 朴炳渉, 「【書評】池内敏『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朝鮮史研究会会報』, 209号, 2017b, 23-24쪽.

> 한국 측의 숨은 선전 공작만은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케우치의 2016년 서적에 대한]서평을 쓴 박병섭 씨는 조선사연구회 5월 월례회(2017.5.20)에서 이케우치 씨에게 "칙령 제41호의 石島는 어느 섬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라고 질문하자, 이케우치 씨는 "칙령의 石島는 竹島=독도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회답했다고 서평의 마지막에 특기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케우치 씨다운 회답이며, 石島는 島項(관음도)이지 독도는 아니다. 박병섭 씨는 『조선사연구회 회보』의 서평란을 이용해 "칙령의 石島는 竹島=독도"라는 프로파간다를 행한 것이다.[80]

일찍이 이케우치는 "1900년 10월 시점에 대한제국 정부로서 竹島/독도에 대한 영유의사가 명시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竹島/독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일본 측, 한국 측 어느 주장도 결정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81]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론을 주장했다.[82] 그런데 바탕이 되는 이케우치의 견해가 기본적으로 바뀌었다면 나카노의 검토는 헛될 수도 있다. 앞으로 이케우치의 변화가 일본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9. SCAPIN-677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9.1. SCAPIN-677에 관한 논쟁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SCAP) 총사령부(GHQ)는 일본 주변의

---

80) 下條正男, 「実事求是 第51回, 慶尚北道独島史料研究会編『竹島問題100問100答批判2』に対する批判(1)」, 2017年12月21日掲載.
https://www.pref.shimane.lg.jp/admin/pref/takeshima/web-takeshima/takeshima04/takeshima04-2/jitsuji-51.html

81) 池内敏, 「竹島 / 独島論争とは何か」, 『歴史評論』 第733号, 2011, 26쪽 및 31쪽.

82) 中野徹也, 「1905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 『関西大学法学論集』 61巻 5号, 2012, 144-156쪽.

약간 지역을 정치적 및 행정적으로 분리하는 지령 SCAPIN-677을 일본 정부에 내렸다. 이 지령 3조에서 리앙쿠르 암(독도), 쿠릴(치시마 千島) 제도, 소쿠릴(하보마이, 시코탄)제도 등을 '일본국'이라는 정의에서 제외하였다.

이 SCAPIN-677에 대해 일본에서는 오해가 많은데 박병섭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83] 이케우치 사토시는 이 지령으로 말미암아 "일본 영역의 특정 지역에 대해 일본 정부의 정치적 혹은 행정상 권력 행사 내지 행사 기도가 정지되었다. 이 특정 지역 안에 竹島[독도]가 포함되어 있다"[84]고 적었다. 이 견해는 가와카미 겐조의 견해와 똑같다[85]. 그러나 SCAPIN-677은 '일본 영역의 특정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국 외의 지역'에 적용된다고 제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케우치나 가와카미는 제1조부터 오해하고 있다. 또한 이케우치나 가와카미는 竹島[독도]를 '일본 영역의 특정 지역'으로 보았지만, 독도는 제3조에서 일본국이라는 정의에서 제외된 섬이므로 '일본 영역'이 아니며, 따라서 그들의 해석은 오류다.

한편 쓰카모토 다카시는, "한국 측의 '연합국군 총사령부 각서로 말미암아 竹島[독도]는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었다'라는 주장은 오류다"[86]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독도가 SCAPIN에 의해 '일본국'이라는 정의에서 제외되었다면 일본 영토가 아니며, 실제로 SCAPIN-677에서 규정된 일본국의 범위를 나타내는 SCAP 작성 지도 「SCAP 관할 구역, 일본과 남부 코리아(South Korea)」 <그림 4>에서 'TAKE'(독도)는 '남부 코리아(South Korea)'의 구역으로 포함되었다고 반론했다.[87] 다만 SCAPIN-677은 제6조에서, "이 지령 중 조항은 어느 것도 포츠담 선언 제8조에 언급한 소도들의 최종적 결정에 관한 연합국의 정책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했다.

---

83) 朴炳涉, 2016b, 앞의 글, 316-317쪽.
84) 池内敏, 2016, 앞의 책, 191쪽.
85)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249쪽.
86)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14, 앞의 책, 98쪽.
87) 朴炳涉,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 『北東アジア文化研究』 38号, 2014, 45-47쪽.

일본 영토의 최종결정은 대일 평화조약에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SCAPIN은 그때까지 유효한 지령이다.

9.2.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관한 논쟁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조(a)에서 “일본국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하고 독도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조약에 관해 이케우치는, “조약에서 竹島[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음은 미국의 설명에도 있듯이 아주 명쾌하다”고 주장했다.[88] 그가 말하는 미국의 설명은 ‘러스크 서한’(1951.8.10.)과 ‘밴 플리트 보고서’(1954)를 가리킨다. ‘러스크 서한’은 주미 한국대사 양유찬이 대일 평화조약 초안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섬에 독도를 명기하도록 요청한 것을 거부한 미국 국무차관보 러스크(Dean Rusk)의 서한이다. 이케우치는 러스크의 판단이 그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반영되었다고 해석했다. 또한 ‘밴 플리트 보고서’는 독도(Dokto Island)에 관해, “합중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지만 분쟁에 대한 개입은 거부했다”고 기록했다.

이에 대해 박병섭은 다음과 같이 이케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89] 이케우치는 1951년 6월 영·미 양국이 대일 평화조약의 공동 초안을 작성한 후는 미국만이 초안을 수정하고 최종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러스크 서한’에 드러난 미국의 독도 인식이 그대로 조약에서 결정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분명히 오해다. 영·미 양국은 6월 후에도 긴밀히 협의했으며, 미국은 공동 초안을 수정할 때 반드시 영국의 동의를 얻고 최종 초안을 작성했다. 그런데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는 미국 견해는 1953년 12월 9일자 ‘덜레스 전문(電文)’이 밝혔던 바와 같이 많은 조약 서명국 가운

88) 池内敏, 2016, 앞의 책, 229쪽.
89) 朴炳涉, 2016b, 앞의 글, 320쪽.

데 미국 일국의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공동 초안의 작성 당사자인 영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 외로 판단하여 독자적인 최종 초안을 작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조약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규정하려면 영·미 양국이 협의하여 공동 초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작업은 없었으며, 영·미 양국은 독도에 대한 생각이 엇갈린 채 조약이 조인되었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임이 함의되고 있다는 이케우치의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쓰카모토 다카시도 '러스크 서한'을 근거로, "일본 영토로서의 竹島[독도] 지위에는 제2차 세계대전 후도 변동이 없었다"[90]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쓰카모토는 독도가 SCAPIN-677에 따라 일본국의 정의에서 제외된 것을 무시하지만, 독도의 지위에는 변동이 있었다. 또한 쓰카모토는 '러스크 서한'에 반론한 '변영태 서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 '변영태 서한'을 인용하여 박병섭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91] 한국은 '러스크 서한'의 내용을 수용한 것이 아니며, 물론 이에 반론했다. 1951년 9월 21일자 '변영태 서한'은 한국의 독도 영유의 정당성을 미국 정부에 주장했다. 이처럼 독도에 관한 한·미 협의는 진행 중이었으며, 그 사이 미국은 독도에 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물론 최종 공동초안 작성에서도 영국과 독도에 관해 협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미 양국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는 미국과 일본 영토 외로 보는 영국의 견해가 엇갈린 채로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연합국은 덜레스 전문이 밝힌 바와 같이 독도에 관해 아무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조약을 발효시켰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자체로부터는 독도에 관해 아무 해석도 도출할 수 없다.

결국 SCAPIN-677에 의해 잠정적으로 일본국의 정의에서 제외되었던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렇다면 일본 정부

90) 塚本孝, 2016, 앞의 글, 62(97)쪽.
91) 朴炳渉,「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から洩れた論争中の島々」,『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43号, 2017a, 31쪽.

는 독도가 SCAPIN-677에서 일본 영역에서 분리되었던 현상을 조약 발효 후에도 유보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다케시마(독도)를 일본의 도서 외로 규정한 일본 법령을 강화조약 후에도 그대로 유지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는 새로 '접수 귀금속 등의 수량의 보고에 관한 법률'을 1952년 8월 5일에 제정하고, 이 시행령인 '대장성령 99호'에서 竹島(독도)를 일본의 부속 도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공포했다.[92] 이런 정책은 우티·포씨디티스(*uti possidetis*)원칙에 합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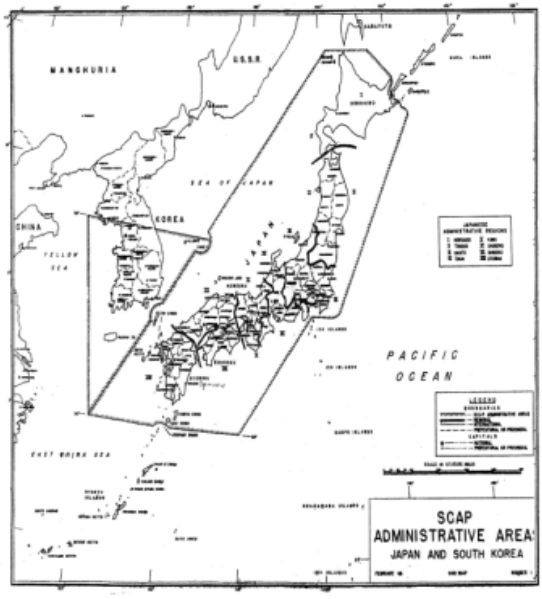

<그림 4> SCAP 작성 지도 「SCAP 관할 구역, 일본과 남부 코리아」

우티·포씨디티스는 라틴어이며, 영역하면 'as you possess'인데 이 용어는 해석이 확대, 변질되어 최근에는 '행정구획선의 승계'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이 원칙에 따라 역사적으로 중남미 제국이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당시

92) 朴炳渉,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後の日本の竹島＝独島政策」, 『北東アジア文化研究』 第42号, 2016c, 22쪽.

의 행정구획선이 국경선이 되었다. 최근에는 소련이 해체하고 각국이 독립할 때 그 순간의 행정구획선이 국경선이 되었다. 각국은 독립하는 순간의 기존 행정구획선을 승계한 것이다.

1948

박병섭은 이 원칙을 한국 및 일본의 독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용했다.[93] 한국의 독립은 ~~1945~~년 8월 15일이며, 그 순간의 한국의 행정관할구역은 <그림 4>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독도를 포함한 구역이었다. 다만 이 구역은 구 일본제국의 영역이었으므로 한·일 간 경계는 최종적으로 대일평화조약에서 결정되어야 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독도에 관해 아무 결정을 하지 않았다.

한편, 일본의 독립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된 1952년 4월 28일인데 그 순간의 일본의 행정관할구역은 SCAPIN-677 등에 의해 규정되었듯이 독도는 일본국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또한 일본정부 자신도 대장성령 제4호(1951.2.13.),[94] 총리부령 제24호(1951.6.6)[95] 등으로 竹島[독도]를 행정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독립 후에도 그 정책을 유지했다. 이처럼 일본이 독립한 순간 한·일 양국 간 행정관할경계는 <그림 4>에 표시된 바와 같이 독도는 한국의 행정관할구역 안에 있었다. 따라서 일본이 독립하는 순간 우티·포씨디티스 원칙을 적용하면 독도는 한국 영토가 된다. 또한 실제로도 한국은 독도에 '독도 조난 어민 위령비'를 건립하는 등 행정조처를 미치고 있었다.

---

93) 朴炳渉,「独島領有権に対する歴史·国際法の学際間研究」, 2019, 32-36쪽 (아래 사이트). 이 논문은, <박병섭,「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국제법 학제간 연구」『獨島研究』 27号, 2019, 7-72쪽>를 번역한 것이다.
http://www.kr-jp.net/ronbun/park/park-1912j-int.pdf

94)「旧令による共済組合等からの年金受給者のための特別措置法[1950.12.12]第4条第3項の規定に基く付属の島を定める省令」.

95)「朝鮮総督府交通局共済組合の本邦内にある財産の整理に関する政令[1951.3.6]の施行に関する総理府令」.

10. 맺음말

일본에서 竹島·독도에 관한 논문이나 논설을 가장 많이 쓴 연구자는 시모조 마사오다. 시모조가 쓴 논문·논설의 특징은 자기주장을 아무 설명도 없이 자주 변경하는 것이다. 시모조는 1877년 태정관 지령에 대한 견해를 네 번이나 바꾸었다. 또한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기재된 石島의 비정을 네 번이나 바꾸었으므로 정견이 없다. 시모조는 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글을 썼는지, 변경의 이유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 시모조는 '학문적 영위'가 의심된다.

한편, "불필요·부당한 혼란을 논의의 현장에 가져왔다"고 해서 이케우치 사토시로부터 '학문적 영위'를 의심받고 있는 자가 쓰카모토 다카시다. 쓰카모토도 중요한 논점을 많이 바꾼 연구자이므로 그의 글을 인용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쓰카모토는, ① 당초는 竹島[독도]를 무주지로 보고 竹島[독도]는 일·한 어느 나라에 있어서도 고래 영토가 아니라 국제법상은 무주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일본은 17세기에 竹島[독도]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견해를 바꾸었다. 또한, ② 1877년 태정관 지령이 본방[일본]과 관계없다고 지령한 '다케시마 외 일도'에 관해 당초는 다케시마는 울릉도이며 '외 일도'는 마쓰시마[독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주장을 바꾸어, 시마네현이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는 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였으나 정부에서는 다케시마는 울릉도, '외 일도'도 울릉도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게다가 ③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石島에 관해 당초는 石島를 독도로 간주했다. 그러나 2016년에는 칙령 제41호 원문에 있는 것은 石島이며, 이를 독도와 관련시키는 것은 한국정부의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쓰카모토는 과거의 자기주장을 바꾸어 외무성 주장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쓰카모토가 외무성 견해의 '구멍 메우기'를 하고 있다는 이케우치의 평도 일리

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쓰카모토의 자세를 이케우치 사토시가 엄히 비판했음은 이미 소개했으나 비판은 그만이 아니었다. 이케우치는 쓰카모토의 앞의 견해 ②에 대해 "오독의 여지가 전혀 없는 쉬운 사료임에도 불구하고 곡해를 되풀이하는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는다", "마쓰시마(竹島[독도])가 17세기 이래 계속해서 일본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태정관 지령은 용인할 수 없는 사료다. 이 때문에 이 사료가 말하는 '다케시마 외 일도'의 '외 일도'는 마쓰시마가 아니라는 것을 되풀이해서 강변한다", "[이들의] '논증'에서는 확실히 체면을 돌보지 않는 필사의 각오가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예를 들어 사료해석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나, 사료가 스스로 밝히는 바를 무시하여 자기 해석을 우선으로 하면 안 된다는, 사료 독해의 기본을 결여한 '체면을 돌보지 않는 필사의 각오'다"[96]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서 "불필요·부당한 혼란을 논의의 현장에 가져왔다"고 하는 쓰카모토에 대한 이케우치의 분노를 느낄 수 있다.

이케우치의 비판은 쓰카모토의 '마쓰시마 도해허가'설에도 향했다. 이 설은 가와카미 겐조의 '마쓰시마 도해면허'설을 손질했던 것인데, 만약 이 설이 성립된다면 이는 쓰카모토 자신이 일찍이 무주지로 생각했던 竹島[독도]에 대해 일본이 원시적 권원을 가질 수도 있으며, 외무성이 말하는 "일본은 17세기에 竹島[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했다"라는 주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막부의 허락·공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어이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 것처럼 보이는 쓰카모토의 주장에 대해 이케우치는 '폭론'이라고 결론지어, "역사 사실은 사료를 바탕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서도 쓰카모토의 주장은 이케우치에 의해 부정된 것이다.

게다가 이케우치의 쓰카모토 비판은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에도 향했다. 쓰카모토는 이 금지령은 마쓰시마(독도)로의 도해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며 여전히 일본 영토로 생각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케

96) 池内敏, 2016, 前掲書, 114-118항.

우치는 덴포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이 겐로쿠 기의 금지령을 바탕으로 했으므로 금지령은 마쓰시마로의 도해를 함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덴포 기의 막부는 겐로쿠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오해하고 있었으며, 이케우치의 논증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 약점을 박병섭이 보완했다. 덴포 기 막부는 마쓰시마도 일본 소속이 아님을 충분히 조사한 뒤 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사료가 평정소 관계자가 작성한『조선 다케시마 도항 시말기』부속 지도 <그림 3>으로 거기에는 다케시마·마쓰시마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다.

이상과 같은 비판에 대해 쓰카모토의 본격적인 반론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이케우치의 주장이 차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케우치 논문의 신뢰성은 근세 및 근대 초기 일본사에 한정된다. 그 후의 일본 역사나 조선사에 관해서는 기무라 간이 비판했듯이 문제가 많다. 그 하나의 예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케우치는 한국 정부가 음운변화설을 바탕으로 石島를 독도라고 하는 주장을 유론(謬論)으로 보았으나, 최근에는 박병섭이 제시한 일본 외무성의『다케시마 어업의 변찬』에 있는 오쿠무라 료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칙령 제41호의 石島는 독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을 바꾸었다. 이는 주목되는 변화다.

또한 이케우치의 광복 후에 관한 연구에도 문제가 많다. 특히 SCAPIN 조항의 해석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성립과정 등에 관한 해석에는 오해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조립한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관해서는 쓰카모토의 논문이 많이 있으나, 쓰카모토나 이케우치는 '덜레스 전문'이나 '변영태 서한' 등 중요한 자료에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마침 '러스크 서한'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그대로 반영된 듯이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먼저 '덜레스 서한'으로 부정된다. 다음은 박병섭에 의하면, '변영태 서한'으로 말미암아 강화조약 조인 후에도 독도에 관한 한·미 협의가 진행 중이었음이 명확하며, 그 사이에 미국은 독도에 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영국과의

협의도 하지 못했다. 따라서 연합국은 독도에 관해 아무 결론도 내지 않은 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비준한 것이다.

동 조약에서 독도에 대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 한·일 양국이 독립한 시점의 국경은 국제법에서의 우티·포씨디티스 원칙, 즉 '행정구획선의 승계'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고 박병섭은 주장했다. 한·일 양국의 각각의 독립 시점에서 독도는 SCAPIN-677 관련 지도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행정관할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독도는 우티·포씨디티스 원칙에 따라 한국의 소속이 된다. 또한 그동안 한국은 독도에 '독도조난어민위령비'를 세우는 등 행정조치를 취했던 반면, 일본은 법령에서 독도를 행정관할구역에서 제외했으며 실질적으로도 독도는 한국의 행정관할구역 안에 있었다.

최근 일본에서의 독도 연구는 연구자들 간의 치열한 논쟁을 통해 일진월보로 발전하고 차차 독도/竹島 문제의 논쟁이 수렴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독도 연구도 일진월보로 발전했다. 십여 년 전 나이토 세이추는 한국의 독도 연구가 일본의 문헌을 경시한 일국주의라고 비판했으나 지금은 그런 비판이 없다. 한·일 양국에서 학술 정보의 소통이 조금씩 이루어진 결과, 칙령 제41호의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양국 간 견해차도 조금씩 좁혀졌다. 장차 독도/竹島에 관한 양국 연구자들의 주장이 거의 일치하는 날이 오면 독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물론 '학문적 영위'가 의문시되는 연구자들의 주장은 제외된다.

【참고문헌】

内藤正中,『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 多賀出版, 2000
内藤正中·金柄烈,『史的検証 竹島·独島』, 岩波書店, 2007
大西俊輝,『日本海と竹島』, 東洋出版, 2003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竹島問題100問100答』, ワック, 2014
_____,『「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07
木村幹,「池内敏著『竹島問題とは何か』」,『東洋史研究』, 2014
梶村秀樹,「竹島問題と日本国家」,『朝鮮研究』182号, 1978
박병섭,「독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국제법 학제간 연구」,『독도연구』27호, 2019
朴炳渉,「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獨島硏究』第4号, 2008
_____,「下條正男の論説を分析する」,『獨島硏究』第7号, 2009
_____,「明治時代の欝陵島漁業と竹島＝独島問題(2)」,『北東アジア文化研究』, 32号, 2010
_____,「江戸時代の竹島＝独島での漁業と領有権問題」,『北東アジア文化研究』35号, 2012
_____,「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と千島·竹島＝独島問題」,『北東アジア文化研究』38号, 2014
_____,「元禄·天保竹島一件と竹島＝独島の領有権問題」,『北東アジア文化研究』40号, 2015
_____,「明治政府の竹島＝独島調査」,『北東アジア文化研究』41号, 2016a
_____,「池内敏『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獨島硏究』第20号, 2016b
_____,「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後の日本の竹島＝独島政策」,『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42号, 2016c
_____,「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から洩れた論争中の島々」,『北東アジア文化研究』第43号, 2017a
_____,「【書評】池内敏『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朝鮮史研究会会報』, 209号, 2017b
_____,「天保竹島一件における松島(独島)に対する日本の領有権論争」,『韓日關係史研究』67輯, 2020
中野徹也,「1905年日本による竹島領土編入措置の法的性質」,『関西大学法学論集』61巻 5号, 2012
森須和男, “天保竹島一件顚末,”『郷土石見』102号, 2016

舩杉力修, 「絵図·地図からみる竹島(II)」,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竹島問題研究会, 2007
池内敏, 「一七～一九世紀鬱陵島海域の生業と交流」, 『歴史学研究』 756号, 2001
_____, 「竹島 / 独島論争とは何か」, 『歴史評論』 第733号, 2011
_____, 『竹島問題とは何か』, 名古屋大学出版会, 2012
_____, 「「国境」未満」, 『日本史研究』 630号, 2015
_____, 『竹島―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 中公新書, 2016
_____, 『日本人の朝鮮観はいかにして形成されたか』, 講談社, 2017
_____, 「죽도(독도)의 활용실태와 영유권(竹島(獨島)の活用実態と領有権)」, 『獨島研究』 23호, 2017
_____, 「日本と韓国の「固有領土」論」, 『第1回 芳村獨島研究会 国際学術会議論文集』 2018
_____, 「17世紀竹島漁業史のために」, 『名古屋大学人文学研究論集』 第2号, 2019a
_____, 「「老中の内意」考」, 『日本史研究』 682号, 2019b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 古今書院, 1966
塚本孝, 「竹島関係旧鳥取藩文書および絵圖(上)」, 『レファレンス』 411号, 1985
_____,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 『調査と情報』 , 1994(初版), 1996(第2版), 2011(第3版)
_____, 「日本の領域確定における近代国際法の適用事例」, 『東アジア近代史』 第3号, 2000
_____, 「元禄竹島一件をめぐって」, 『島嶼研究ジャーナル』 2巻2号, 2013
_____, 「竹島領有権をめぐる韓国政府の主張について」, 『東海法学』 52号, 2016
_____, 「国際法的見地から見た竹島問題」、『不条理とたたかう』, 拓殖大学, 2017
_____, 「大谷家文書「乍恐申上候口上之覚―両島渡海禁制に関連して」, 『第4期「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島根県, 2020
下條正男, 「続 竹島問題研究の課題」 『現代コリア』, 2005a, 7/8月号
_____,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島根県会議, 2005b
_____, 「実事求是、第20回「東北アジア歴史財団」の愚挙」,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2009年度, 島根県, 2011
_____, 「実事求是 第51回, 慶尚北道独島史料研究会編『竹島問題100問100答批判2』に対する批判(1)」, 2017
_____, 「歴史認識問題としての竹島問題を何故、解決できないのか」, 『歴史認識問題研究』 4号, 2019

<Abstract>

Historical Studies of Japanese Academia on Dokdo/Takeshima since 2000

Park, Byoung-sup

Controversy among researchers is fierce on Dokdo/Takeshima in papers written in Japanese. In particular, there is a fierce controversy between Satoshi Ikeuchi and Takashi Tsukamoto.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views are as follows. (1) Regarding Takeshima and Dokdo sovereignty in the 17th century, Tsukamoto "recently" claims that Japan had historical title, but Ikeuchi claims that Japan has abandoned sovereignty. (2) Ikeuchi concluded that Tsukamoto's "Permission to travel Matsushima" theory was wrong. (3) Regarding the Takeshima (Ulleungdo) ban on sea travel, Tsukamoto argues that travel to Matsushima (Dokdo) is not prohibited, but Ikeuchi argues that the ban on Matsushima sea travel is implied. (4) Ikeuchi claims that the Jisha-bugyō in the 1740s recognized that both Takeshima and Matsushima were prohibited from traveling to the sea, but Tsukamoto doubts. (5) Regarding the Tenpo Takeshima ban on sea travel, Ikeuchi says that travel to Matsushima is not allowed, but Tsukamoto insists that there is no problem. (6) Regarding the idetification of "Takeshima and one other island" in Dajokan order in 1877, Ikeuchi says that they are Takeshima (Ulleungdo) and Matsushima (Dokdo), but "recent" Tsukamoto says that both Takeshima and "one other island" are likely to be Ulleungdo. (7) Regarding the idetification of

Seokdo in Imerial Decree No. 41 in 1900, "recent" Ikeuchi tries to be Dokdo, but "recent" Tsukamoto says that it is only the Korean government's interpretati on to regard it as Dokdo.

In this Ikeuchi-Tsukamoto controversy, Ikeuchi's argument was sometimes insufficient, but Byoung sup Park supplemented it. Tsukamoto's counterargum ent was weak against Ikeuchi's criticism of Tsukamoto, and there was a sign of convergence in the dispute between the two. On the other hand, the two views agree that Dokdo/Takeshima have been established as Japanese territory by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In response, Byoung sup Park argued that the treaty could not interpret the affiliation of Dokdo/Takeshima in any way, and that the island became a affiliation of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uti possidetis principle in international law.

Key words: The ban on Takeshima sea travel, Dajokan Dok seom, San Francisco Peace Treaty order, uti possidetis

이 논문은 2020년 11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0년 12월 1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